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3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10. 15.
4. 회부일자 : 2021. 11. 1.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1년도 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 말 조성액(e)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1,922,317	1,011,470	936,000	1,997,787	.	1,997,787

※ 이자 추후 반영. 집행계획은 남북관계,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참고사항

- 관계법령: [참고자료1]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8조의2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31호로 제출되어 2021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기금 개관

-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요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통해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분야의 확대·장려 정책 기조에 맞춰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 확대·활성화를 위해 ‘DMZ 생태평화체험’ 및 ‘남북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교육당국 간 남북 교류 채널 미비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새로운 남북교류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9.7.18.)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관계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탄력적 사업운영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것입니다.

나. 수입·지출 계획

-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1,147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2,231만원을 포함한 총 29억 3,37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4조제2항에¹⁾ 따른 기금 조성재원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동 기금의 지출액은 비용자성사업비 9억 3,600만원 및 예치금 19억 9,778만원을 포함한 총 29억 3,37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비용자성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점진적인 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역사 탐방, 남북학생간 교류, 북한교육지원 협력 및 온라인 콘텐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5조 각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²⁾ 적합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동 기금의 지출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³⁾ 근거하여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수당을 비용자성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현행 교육부의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따르면 심의위원 수당을 비용자성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회 심의 시

1)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2)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3)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심의위원 수당을 비용자성사업비에서 기본경비로 변경하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 세출과목 적용 범례⁴⁾

구 분	과 목	
지출	비용자성사업비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고유 정책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용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용자금(320-09)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10-03), 법정부담금(320-05) 등 인력 운영경비 항목(정책사업비 내의 인력운영경비 항목 포함)
	기본경비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30), 자산취득비(400) 등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예치금(830-01)
	예치금	예치금(710-04)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금상환(840-01), 예수금이자상환(840-02)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지출 경비

○ 아울러 지출계획 중 ‘평화·통일 역사유적 탐방’ 사업은 독일, 러시아, 중국 등지를 탐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 간 평화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평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은 남북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교류 등을 통해 통일 이후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 중 ‘평화·통일 역사유적 탐방’ 사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면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운영 시 참가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교육부, 2021.8.)

- 그리고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은 남북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북 학생 간 오케스트라단 상호 초청 공연 및 다양한 스포츠 분야 교류 등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올해 11월 기준 동 기금의 2021년도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2021년도 동 기금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집행액
1	우리는 평화지킴이	15,671
2	교실로 온(on) 평화통일	43,133
3	평화통일 핵심리더 역량강화 연수	4,510
합계		63,314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 실행을 위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끝으로

- 동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4호, 2008.3.11.)」을⁵⁾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호, 2008.3.11.제정)

가. 기금자산관리(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의 현금자산은 세계현금의 보관의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으로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

이에 기금별로 금고 지정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고 다양한 운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금고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나. 기금여유자금 관리

-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